

청주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79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운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22. 6. 28.자 7,560만 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1. 7. 16.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21. 7. 16.부터 2022. 7.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21. 7. 16. 중소기업은행 진천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있어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22. 7.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는데, 2022. 6. 29. 그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22. 8. 29. 기업은행에 95,292,146원을 대위변제한 후 2022. 9.경 대전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95,463,9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B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충북 진천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E를 운영하였는데, 2022. 6. 28. E의 임차보증금 중 잔액인 7,56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E의 사내이사인 피고에게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한 바로 다음날인 2022. 6. 29. E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전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변제를 받을 당시인 2022. 6. 28.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21. 7. 16.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2. 8. 29.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채무초과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총복 진천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할 당시 7,560만 원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만도 9,5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 등에 비추어 피고가 B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실제 대여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9년부터 B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가 대표자인 식자재마트에서 B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변제는 B이 밀접한 관계에 있던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6. 7.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B에게 합계 93,781,810원을 대여하였는데, B이 E를 정리했다고 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하여 2022. 6. 28. B와 함께 임대인을 만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다만, 위와 같은 법리는 피고가 B의 실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B의 실제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을 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7.부터 2020. 7. 31.까지 사이에 B에게 합계 13회에 걸쳐 합계 98,281,810원(이와 관련하여, 피고 주장의 93,781,8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같은 일자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B에게 피고 주장의 금액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9,300만 원을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금의 이자나 변제기 등의 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은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E 내에서 생선코너를 운영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2021. 6. 2. 이후 B의 상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데, B이 E를 정리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연락함에 따라 B과 함께 임대인을 직접 만나서 이 사건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채권자인 피고가 9,3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여한 후 변제독촉조치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피고가 그동안 B에 대하여 대여금채무의 변제독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채무자인 B이 E의 폐업 직전 스스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그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가 B에게 위 돈을 실제로 대여한 채권자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실제 B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B의 채권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